

 <p>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민주시민 육성</p>	가정통신문		2023년 1월 30일 (월)	 <p>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mber of UNESCO Associated Schools</p>	
	담당자 보건(유 * *)				
	담당전화 070-7842-0995				

전북 남원시 낙현길 17-14 / <http://www.seojin.hs.kr> / 063-631-1333(교무실) 063-631-1331(행정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부터 적용되어 실시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제8-1판)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 (적용 시점) 2023. 1. 30.(월)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④ 환경이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	권고 기간
의심 증상자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해당시
고위험군이나 의심 증상자를 접촉하는 자	접촉하는 동안
확진자의 접촉자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참고

학교 · 학원 마스크 관련 사례별 FAQ

Q1.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Q2.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음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Q3.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 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등**
- ▶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Q4.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지?

-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함

2023. 1. 30.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